



주택화재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 아파트, 맨션,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재물)의 특성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또는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이 상품의 보험기간 (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사유

구 분	담보(보장명)	내용(보험금 지급사유)
기본 계약	주택화재보험보통약관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선택 계약	전기위험특별약관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풍재 또는 수해로 생긴 손해
	지진위험 특별약관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확장위험 특별약관(Ⅰ)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
	확장위험 특별약관(Ⅱ)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손해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도난위험 특별약관	강(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별약관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제조달가액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 제조달가액을 보상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특수건물(동산 제외)의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	특수건물(동산 제외)의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합니다.

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험금에서 제외합니다.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일반조항)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③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⑤ 발전기, 여과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⑦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



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⑧ 위 제⑦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산출 예시

- 보험기간 : 1년
- 보험목적물 : 건물 3억원, 일반가재 : 1천만원 (단독주택)
- 건물구조 : 조적조 슬라브집 (내화구조)
- 보장내용 : 화재(기본계약), 도난(선택계약)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화재(건물)	3억원
	화재(일반가재)	1천만원
선택계약	도난(일반가재)	1천만원
보험료		116,300원

* 상기 보험료는 요율변동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에이스손해보험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